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18 선고 2021가단1130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D[개명전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부천시 F건물, G호]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7. 접수 제61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2]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5필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19.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5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이 사건 5필지 부동산 면적 합계 1,904㎡는 모두 할머니(채무자 D의 전 소유자 ‘H’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로 유언으로 이 사건 5필지 부동산을 모두 ‘큰손자’인 피고에게 주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일단 부친 D 앞으로 하여 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5필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즉, 설행하여 보면, 부친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는데 이를 해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다툰다. 그러나 망인 부부의 묘소를 촬영한 을 제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를 이 사건 5필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D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피고가 원래부터 이 사건 5필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함양군 전 357제곱미터.
2. 경상남도 함양군 전 63제곱미터.
3. 경상남도 함양군 답 1,135 제곱미터.
4. 경상남도 함양군 도로 5제곱미터.
5. 경상남도 함양군 임야 344제곱미터.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D 에 대한 채권

가. (주) A 의 파산선고

파산자 (주) A 은 2018. 2. 27. 11:00 인천지방법원2018하합2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변호사 B 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파산선고결정).

나. 피보전채권 - 원고의 소외 D 에 대한 채권

파산자 (주) A 은 지급불능상태에서 소외 D 에 대하여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편파변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0. 1. 21. 위 D 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임의반환받는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두렵 파산법원으로부터 위 화해계약체결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갑 제2호증, 허가서). 구체적인 화해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 해 계 약 서

채무자 (주) A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이하 "갑")과 D (이하 "을")는 아래와 같이 화해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별첨제출을 1부 포함)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기명(서명)날인 후 각각 1통을 보관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 (1) 을은 2020. 6. 30. 까지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갑이 관리하는 파산재단 보관금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파산자 주식회사 A 파산관재인 B)에 합계금 30,0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 (2) 입금기일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2020. 4. 30.까지 금 10,000,000원
 - ② 2020. 5. 31.까지 금 10,000,000원
 - ③ 2020. 6. 30.까지 금 10,000,000원
- (3) 갑은 위 각 기일 내에 위와 같이 정한 각 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화해대금 전액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을을 상대로 미지급 된 화해대금 전액에 대하여 화해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하며 을은 위 소송을 인락하기로 한다.

다. 위 D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

그러나 위 D은 위 화해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화해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0. 5. 13. 위 D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1. 3. 4. 인천지방법원2020가소470801호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소제기허가서, 갑 제4호증, 사건진행내역(인천지방법원2020자전145178), 갑 제5호증,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70801), 갑 제6호증, 사건진행내역(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70801)]

3. 소외 D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소외 D은 원고의 제2항 기재 지급명령신청 이후인 2020. 6. 1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20. 3. 19. 중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지적전산자료,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외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3주 후인 2020. 7. 6. 인천지방법원에 위 법원2020개회1953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 위 개인회생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갑 제9호증, 사건진행내역 출력물(인천지방법원2020개회19535))

위 D의 개인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위 D이 2020. 5. 15. 별건 부동산인 경남 함양군 I 답 7,132제곱미터를 J에게 14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되나 채무자가 이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위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의 지급명령신청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외 별건 부동산도 처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사해행위를 한 뒤 개인회생개시신청까지 함으로써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남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갑 제10호증,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문).

4. 피고의 악의 및 파산법원의 소제기허가

피고는 위 D의 친아들로서 위 D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별건 부동산 등 다른 재산들을 처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갑 제 1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따라서 피고가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 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원고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갑 제12호증, 허가서).

5. 결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